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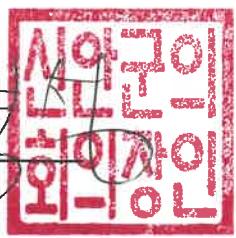
신안군의회 규칙 제20호

공포문

신안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04. 18.)에서 의결된 신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3년 04월 18일

신안군의회 의장



붙임 신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신안군의회 규칙 제20호

신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

신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 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구성 · 운영하며”를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 · 운영하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의회) 및 전국(전남)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계획, 「신안군의회 의원 공무국 외출장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을 “공무국외출장자는”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출장”을 “제1항의”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사무과장, 전문위원 2명, 정책지원팀장
2. 민간위원 : 전직 공무원을 비롯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u>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u>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p> <p>1. ~ 4. (생략)</p> <p><u><신 설></u></p>	<p>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 ----- ----- ----- ---. <단서 삭제></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의회) 및 전국(전남) 시군구의회의 장협의회의 계획, 「신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p> <p>③ ----- 위원장</p>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갑사	

부서의 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신 설>

③ (생략)

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다음 각호

의 자로 구성·운영하며-----

-----.

-----.
-----.

1. 당연직 위원 : 사무과장, 전문위원 2명, 정책지원팀장
2. 민간위원 : 전직 공무원을 비롯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공무국외출장자는 -----

제1 항의 -----

---.